

대학평의원회 회의록

1. 일 시 : 2020. 3. 11(수) ~ 13(금)
2. 장 소 : 서면심의
3. 참석자

구분	인원	성명	비고
참석인원	12	차미희, 박인휘, 정혜중, 박영미, 정연화, 유제욱, 오희아, 김우정, 남상택, 이정화, 장남수, 송희준	신태섭(간사)

4. 안 건

- 제1호의안 :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의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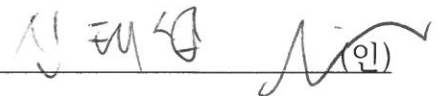
5. 안건심의

- 「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」 제10조에 근거하여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서면 심의를 진행하고,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다.

규정	개정 내용
학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추가 허용 휴학에 대한 조항 신설 및 통합 명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난,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정해진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휴학 허용 - 추가로 허용하는 휴학에 대하여 개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통합하여 명시
대학원 학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전체 학과 수 6개에서 5개로 수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통역학과, 번역학과 → 통역번역학과 변경 반영 • 2020학년도 후기 대학원 편제조정 추가 사항 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학원 컴퓨터학과, 사이버보안학과 → 인공지능·소프트웨어학부로 변경 -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AI융합교육전공 신설 • 일반대학원 융합전공 제도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교 융합전공 제도 개념: 두 개 이상의 학과·학부가 공통 세부전공을 설치하고, 교과과정을 공동 운영함 • 추가 허용 휴학에 대한 조항 신설 및 통합 명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난,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정해진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휴학 허용 - 추가로 허용하는 휴학에 대하여 개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통합하여 명시

2020년 3월 13일

간 사

 (인)

※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라 평의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, 2020.3.13. 현재 의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서면심의를 진행하였기에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간사가 서명 날인하는 것으로 결정함.